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1. 12. 2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곽 영 순 복지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의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안 제1조)

-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2) 시설의 설치(안 제2조)

-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구청장이 고시

3) 관리 · 운영의 위탁 등(안 제4조)

- 시설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만 위탁할 경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4) 수탁자의 선정(안 제5조)

- 수탁자선정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함.
-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5) 운영지원(안 제7조)

-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6) 지도 · 감독(안 제8조)

-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 검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의 제정은 “우리마포복지관” 개관을 계기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별 조례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0 본 조례안 제2조 본문에서 “시설”은 이전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따로 고시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시설별로 구청장이 고시하였을 경우 일반인들이 고시된 시설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0 안 제4조제1항에서 관리·운영의 위탁대상시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본문 규정에 혼선이 있어 조문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0 안 제4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위탁대상시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보호시설 중 청소년 보호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청소년시설” 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4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시설”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0 안 제4조제2항 중 “법 제34조제5항”은 이전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수정을 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1. 12. 20.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안 제2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구청장이 따로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인들이 고시된 시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별표로 규정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제목 “시설의 설치 등” 을 “시설의 설치”로 하고, “시설” 을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로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를 “별표와 같다.”로 함.(안 제3조)

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
- ④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 중 수탁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 ⑤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로 하고,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안 제3조(종전 안 제2조)의 제목 “시설의 설치 등” 을 “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설” 을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안 제5조(종전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
- ④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 ⑤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연번	주관과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1	복지 행정과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5(성산동)	종합복지서비스제공
2		푸드마켓 1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저소득주민지원시설
3		푸드마켓 2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27(신공덕동)	저소득주민지원시설
4		푸드마켓 3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노고산동)	저소득주민지원시설
5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27(신공덕동)	영유아가족 지원
6	사회 복지과	우리마포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노고산동)	종합복지서비스제공
7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3(성산동)	장애인자역사회자활시설
8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상암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4길 30-7(상암동)	장애인자역사회자활시설
10		아현실버문화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3(아현동)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
11		마포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12길 6-2(공덕동)	장기요양보험대상 및 저소득노인보호
12		아현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8길 6(아현동)	장기요양보험대상 및 저소득노인보호
13		창전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1길 30(창전동)	장기요양보험대상 어르신보호
14		한서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3길 80(망원동)	장기요양보험대상 어르신보호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u><신 설></u>	<p><u>제2조(정의)</u>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p>
<u>제2조(시설의 설치 등)</u>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p><u>제3조(시설의 설치)</u> ----- ---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 별표와 같다.</p>
<u>제3조(적용 범위)</u> (생략)	<u>제4조(적용 범위)</u> (원안 제3조와 같음)
<u>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u> ① 관리·운영의 위탁대상시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등(사회복지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p><u>제5조(운영의 위탁 등)</u>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

④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
②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